동료 변호사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고객이 제 보수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받아도 됩니까? 두 나라 모두 가능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자금세탁방지상 효과가 따릅니다. 법률 서비스의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는 스위스 변호사는 그 목적상 금융중개업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금융중개업자로 활동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법상 부담하는 자신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실사 의무를 자문 활동으로 확대하는 2024–2026년 개혁을 함께 고려하면, 지급하는 지갑을 심사하고 출처를 문서화하는 것이 신중한 처사입니다. 싱가포르에서는 Legal Profession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nd Financing of Terrorism) Rules 2015가 고객에 대한 고객실사(CDD)와 이례적인 지급 수단에 대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두 나라 모두에서 보수는 수령 시의 가치로 평가된 소득입니다.[1]

독일에 있는 제 고객이 스위스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험 지점은 무엇입니까? 독일의 세법상 거주지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독일의 과세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소득세법(EStG) 제23조의 개인 양도 규정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1년 미만 보유한 가상자산의 차익은 과세되고 그보다 오래 보유한 가상자산의 차익은 비과세됩니다. 구조에 대한 투명성 등록부를 포함하여 독일의 자금세탁방지 및 보고 규정도 적용됩니다. 스위스는 스위스 금융기관의 계좌에 대해 공통보고기준(CRS)에 따라 독일에 보고하며,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빨라도 2028년부터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에 따라 보고할 예정입니다(제C편 제VI장 및 제G편 제VII장 참조). 독일 고객의 위험은 미신고 단기 차익과 미신고 스테이킹 소득에 있으며, 정보가 도착하기 전에 조세기본법(AO) 제371조에 따른 독일의 처벌 면제 자진신고로 이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2]

준거법 조항이 없는 경우, 스위스 당사자와 싱가포르 당사자 간 토큰 분쟁에는 어느 법이 적용됩니까? 계약상 청구에 대해 스위스 법원은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통상 특징적 급부를 하는 당사자의 소재지법을 적용합니다(국제사법(IPRG/PILA) 제117조). 싱가포르 법원은 유사한 원칙에 따라 계약의 고유 준거법(proper law)을 적용합니다. 물권적 청구에 대해서는 두 법원 모두 토큰의 소재지 문제로 고심하며, 키 보유자 또는 거래소 계정이 소재하는 곳의 법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훈은 준거법 조항을 두라는 것입니다. 기본 규칙은 불확실성을 낳고, 이는 자금력이 더 풍부한 당사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3]

스위스 판결을 싱가포르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보통법상으로만 가능합니다. 즉 판결을 채무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스위스는 Reciprocal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ct 1959에 따라 고시된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스위스 법원이 보통법 원칙상 관할권을 가졌고, 사기, 공서양속 또는 자연적 정의에 의한 항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확정된 스위스 금전판결을 집행합니다. 비금전 판결(토큰 인도 명령)은 보통법상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이행이 구제수단인 경우 중재나 싱가포르 소송이 선호됩니다.[4]

싱가포르 판결을 스위스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국제사법 제25조–제32조에 따라, 싱가포르 법원이 스위스법상 의미의 관할권을 가졌고(국제사법 제26조),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제27조의 거부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는 외국의 비금전 판결도 승인하므로, 토큰 인도 명령은 스위스 수탁기관이나 스위스 거주 피고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따른 간이절차이며, 금전판결에 대해서는 채무추심 및 파산법상의 집행 조치가 따릅니다.[5]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고객이 시드 문구를 에스크로로 보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응해야 합니까? 서면 에스크로 계약이 있는 경우에만 응하십시오. 계약은 해제 조건을 정하고, 변호사가 키를 사용할 권한을 배제하며, 변호사의 책임과 보험을 다루고, 보안 조치(봉인, 분할, 수탁기관 보관)를 규정해야 합니다. 많은 전문직 배상책임 보험사는 이 위험을 보상에서 제외하거나 한도를 두므로, 수락 전에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키를 보유한 변호사는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지며, 그 약정이 영업으로서 제3자를 위한 수탁에 해당한다면 자금세탁방지법상 금융중개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방법은 라이선스를 보유한 수탁기관을 이용하고, 다중서명 방식에서 변호사가 여러 키 보유자 중 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6]

실무 메모

이 질문들은 모두 제가 여기에 적힌 형태 그대로 받은 질문입니다. 대부분은 이미 다른 누군가로부터 자신 있는 답변을 들은 고객들이 한 질문이었습니다. 틀린 것으로 드러난 자신 있는 답변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 관할권의 법만 다루고 다른 관할권의 법은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싱가포르 질문에 대한 스위스식 답변, 또는 그 반대는 디지털 자산 실무의 전형적인 오류입니다. 고객이 이동하고, 토큰이 이동하며, 거래상대방은 프로토콜이 배치한 곳이면 어디든 있기 때문입니다. 받는 모든 답변에 대해 다음을 물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어느 법에 따른 것이며, 다른 법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주

1. 자금세탁방지법 제2조 제3항; Legal Profession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and Financing of Terrorism) Rules 2015; 제F편 제VI장 및 제L편 제IV장 참조. ↩
2. Einkommensteuergesetz 제23조 제1항 제2호; Abgabenordnung 제371조; 독일 관련 국경 간 사안에 관하여는 제G편 제VIII장 참조. ↩
3. 국제사법 제117조 및 소재지 문제는 제D편 제IX장; 제J편 제VIII장.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4. Reciprocal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ct 1959; 보통법상 집행 경로는 제J편 제VIII장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
5. 국제사법 제25조–제27조; 민사소송법 제251조 및 제335조 이하; 제D편 제IX장 및 제H편 제VIII장 참조. ↩
6. 자금세탁방지법 제2조 제3항 b호(수탁); 제F편 제II장 및 제P편 제VIII장 참조.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